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3가단2196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19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,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0411분의 82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. 2. 2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,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0411분의 824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0. 14. 접수 제231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병률

별지